2026년 대학안전관리계획

2026. 2.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Ⅰ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과제

1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4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목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 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 분	주요 법률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안전사고	▪「고등교육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비상사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방침

○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의무 이행사항으로 규정

○ 대학 소속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내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여 총장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강조

○ 각종 사고(재난, 안전, 산업재해 등)는 안전관리 분야별 담당부서에서 중점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대응 네트워크 구축

○ 대학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관련 업무는 안전관리 분야별 담당부서 내 인원 확보 노력

-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각 업무분장 부서에서 주관

○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및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활용

□ 수립 절차

○ **(계획수립·시행)**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 · 시행

○ **(계획게시·제출)**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1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동아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 승학캠퍼스)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 구덕캠퍼스)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 • 부민캠퍼스)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연락처	안전관리센터) 051-200-8116 ~ 8118		
홈페이지	www.donga.ac.kr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 2025. 10. 1. 기준

■ 기타: 조교(학사, RN, 교육, 연구), 전임연구원 및 전임상담원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23,244	1,522	356	46	25,168

교직원 (명)	교원	직원	학생보호인력 (보안 용역 인원 등)	기타 *	합계
	1,753명	405명	47명	487명	2,692

2 조직체계 현황

○ **대학 총괄 안전관리 조직체계 확립**

- 안전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상시 · 비상 시 대응 체계 구축
- 안전관리 분야별 담당부서 지정 및 업무 분장을 통한 대학 안전관리 업무 체계 마련
- 총괄 안전관리 전담 조직 설치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으로 안전관리 체계 마련

○ **대학안전 관련 환경 변화 대처 필요**

- 산업안전 체계 구축으로 교육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필요

○ **주요기능**

- 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 안전점검 추진
-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범죄, 산업안전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관리센터	각 담당·유관부서
1. 재난	자연재난(태풍, 호우, 지진 등)	건설과	총무과, 관리과
	사회재난(화재, 폭발, 건물붕괴 등)	건설과	총무과, 관리과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학생)	학생과	
	연구실 사고	안전관리센터	건설과
	교육시설 안전	건설과	
3. 감염병	감염병(코로나-19 등)	보건진료소	
4. 범죄	성범죄	인권센터	학생과, 총무과, 학생상담센터
	일반범죄	관리과	
5. 산업재해	산업재해	안전관리센터, 총무과	
	중대재해	안전관리센터, 총무과	
6. 기타	비상사태	총무과	

□ 비상 연락망

부서명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총장실	총장	이해우	비서실) 051-200-6000
부총장실	부총장	김성재	비서실) 051-200-6001
안전관리센터	소장	허남인	안전관리센터) 051-200-8119
인권센터	센터장	정해영	인권센터) 051-200-5711
학생·인재개발처	처장	신용택	학생복지과) 051-200-6201
사무처	처장	허남인	총무과) 051-200-6601 관리과) 051-200-6631
건설관리본부	본부장	권태정	건설과) 051-200-6421
보건진료소	소장	박영진	보건진료소) 051-200-6331

□ 비상 대응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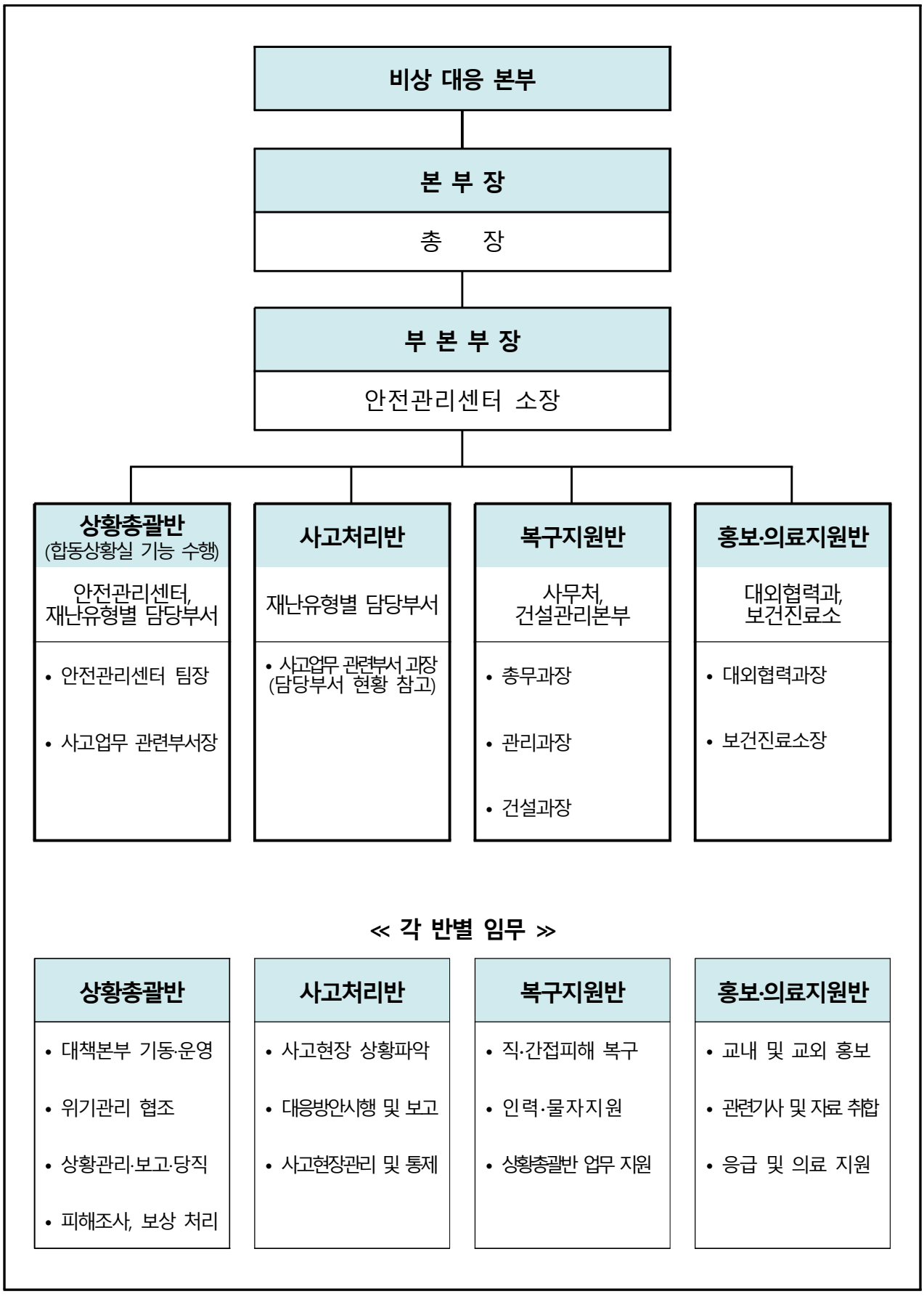

≪ 각 반별 임무 ≫

상황총괄반	사고처리반	복구지원반	홍보·의료지원반
• 대책본부 기동·운영	• 사고현장 상황파악	• 직·간접피해 복구	• 교내 및 교외 홍보
• 위기관리 협조	• 대응방안시행 및 보고	• 인력·물자지원	• 관련기사 및 자료 취합
• 상황관리·보고·당직	• 사고현장관리 및 통제	• 상황총괄반 업무 지원	• 응급 및 의료 지원
• 피해조사, 보상 처리			

□ 비상 대응 체계

○ 대학 내·외부 재난 상황 전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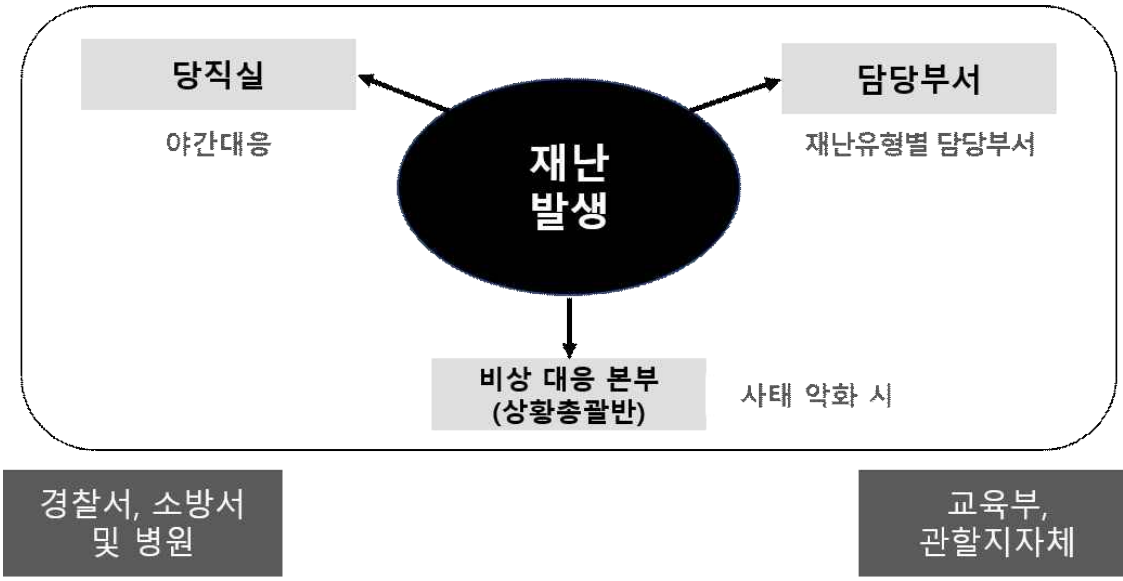

○ 재난 심각단계 이전

담당부서	당직실	비상 대응 본부
재난유형별 담당부서	야간대응	사망자 발생 등 사태 악화 시 운영

○ 재난 심각단계

담당부서	비상 대응 본부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재난유형별 담당부서	주야대응	주야대응

경찰서	소방서	병원
・사하경찰서) Tel.051-290-2330 ・서부경찰서) Tel.051-540-1030	・하단119안전센터) Tel.051-292-0119 ・부민119안전센터) Tel.051-254-0119	・프라임병원) Tel.051-202-7800 ・동아대학교의료원) Tel.051-240-5300

부산시 시민안전실	사하구 안전총괄과	서구 구민안전과
Tel.051-888-2883	Tel.051-220-4642	Tel.051-240-4642

부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사하구 상황실	서구 상황실
Tel.051-888-4119	Tel.051-220-4222	Tel.051-240-4222

Ⅱ 위험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	건설과	팀장	최구진	051-200-6426~7	
담당	건설과	담당	박종민	051-200-6426~7	
담당	건설과	담당	강동훈	051-200-6426~7	
담당	건설과	담당	정재헌	051-200-6424	
협조	총무과	담당	권성길	051-200-6603	
협조	관리과	팀장	이원호	051-200-6632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돗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 건수		4	2	0	1	0	1.4
재산피해(백만원)		8.8	31	0	260	0	59.96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원인분석

○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 국지성 집중호우 및 슈퍼태풍, 게릴라성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 **시설물 피로도 증가**
- 매년 거듭된 자연재해로 시설물의 피로도가 증가
- 시설물 피로도 누적으로 누수 등이 발생

○ **구성원의 주인 의식 부족 및 인력 한계**
- 예고된 자연재해 발생 전 창문 시건 확인 등 예방조치 협조를 공지하나 제대로 조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사전 예방조치 대상은 많으나 인력이 한정되어 선제적 조치에 어려움이 많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시설물 사전 점검 및 선제적 예방 조치
- 동·하절기 사전 점검(건물 옥상, 배수로, 장비 고정 점검, 배관 점검)
- 재해 대비물자 점검(모래주머니, 염화칼슘, 제설장비 확인 등) ☞ **관리과 협조**
- 비상사태 시 인력동원을 위한 사전 협의 ☞ **총무과 협조**
- 소방전문업체를 월간(외관 점검) 및 정기(종합점검 및 작동점검 각 연1회) 점검 실시
- 연1회 관할 소방서와 합동 소방 훈련 실시
- 법정 필수 교육으로 소방안전교육(온라인) 실시 ☞ **총무과 협조(LMS교육)**
- 근무시간 외에 교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자연재난(폭우, 태풍)에 대하여 그룹 메일 등을 통한 사전 공지로 피해 최소화

○ **(대응·조치)** 체계적 보고를 통한 신속한 대응 실시
- 재해 발생 시 체계적 보고 및 신속한 공지 실시
- 경비 순찰자 순찰구역 및 횟수 확대(옹벽, 사면 등) 및 신속 대응 실시☞ **관리과 협조**
- 예고된 자연재해 발생 시 당직근무 계획 및 배치
- 시설물 파손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설물 신속 복구

※ 참고 매뉴얼 :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3)

○ **(수습·복구)** 피해 상황 집계 및 시설물 복구
- 피해 상황 집계를 통한 피해액 누계 산출 및 복구 계획 수립(파손 원인 파악 등)
- 위험 구간 접근 금지를 위한 임시 조치 실시
-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파손은 신속한 복구 실시

□ 재난 대응 및 복구 체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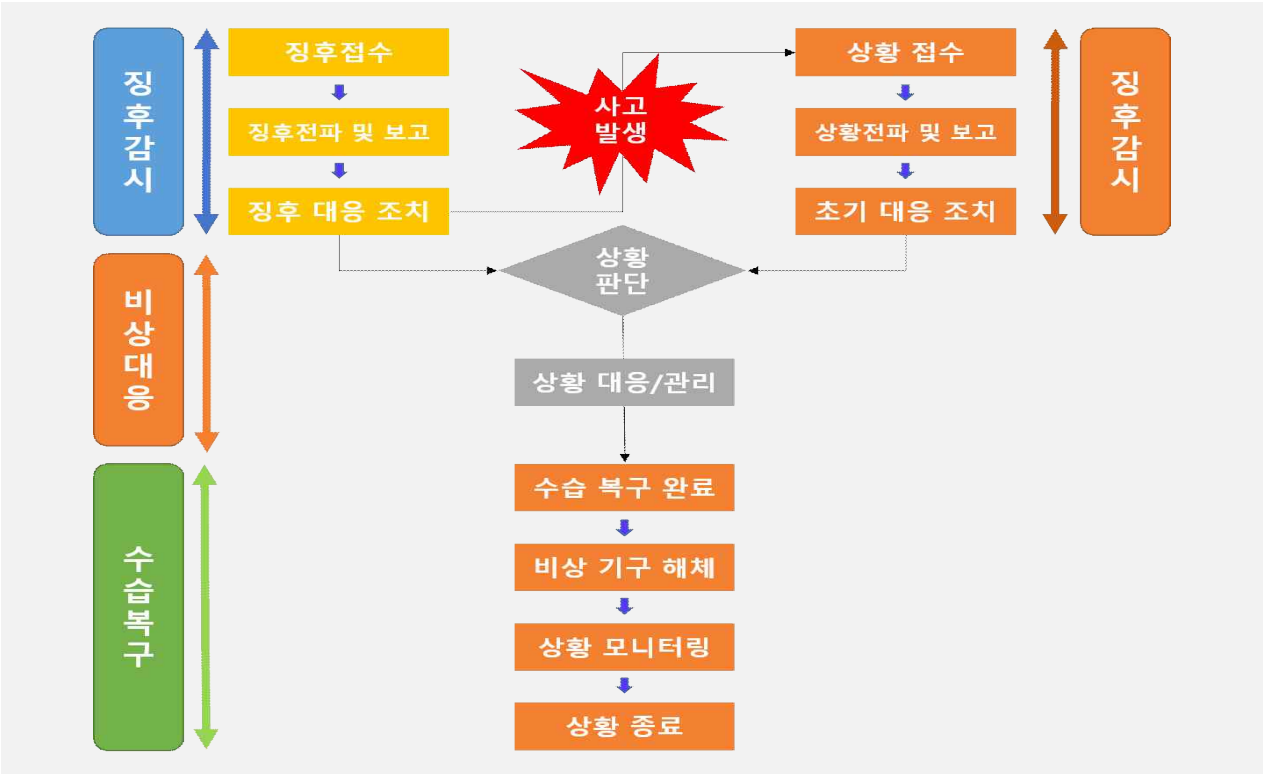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종합점검 보수	50	59.2	45	154.2	
작동점검 보수	71	47.8	45	163.8	
소방시설 보수유지비	80	78	50	208	
소방 안전관리 용역비	94.5	94.5	86	275	
건축물 방수 공사비	790	719	100	1,609	
계	1,085.5	998.5	326	2,410	

2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	건설과	팀장	최구진	051-200-6426~7	주관부서
총괄	건설과	팀장	신병준	051-200-6421~2	
담당	건설과	팀장	양주순	051-200-6423	
담당	건설과	담당	박종민	051-200-6426~7	
담당	건설과	담당	강동훈	051-200-6426~7	
담당	건설과	담당	이일성	051-200-6428	
담당	건설과	담당	정재헌	051-200-6424	
담당	건설과	담당	손재홍	051-200-6423	
담당	건설과	담당	김시동	051-200-6422~4	
협조	총무과	담당	권성길	051-200-6603	협조부서
협조	관리과	팀장	이원호	051-200-6632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원인분석

○ **해당 사항 없음(사회재난 발생 건수 : 0)**
- 최근 국내 대형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다중이 이용하는 학교 건물 특성상 사고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노후 건축물을 중점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참고 매뉴얼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2021)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참고 매뉴얼 :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3)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52	86	32	170	
계	52	86	32	170	

2. 안전사고

1 대학안전사고(학생)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	학생복지과	과장	김대준	051-200-6201	
담당	학생과	담당	정보윤	051-200-6202	
담당	학생과	담당	윤지원	051-200-6202	보험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해,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 건수		4	10	17	23	16	14
재산피해(백만원)		2	4	3	14	8	6.2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4	10	15	17	13	11.8
	계	4	10	15	17	13	11.8

□ 원인분석

○ 대면 교육활동 및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

- 최근 3년간 교내 피해 발생 건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보이며, 특히 2023년 이후 대면 교육활동 및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 예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정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참고 교내 지침 : 학생 자치 공간 관리지침(2019.5.)

○ **(교외활동)** 대학본부,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시설 이행,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 참고 매뉴얼 :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4)

※ 참고 매뉴얼 :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 참고 교내 지침 : 교외 단체행사에 관한 지침(2019.3.)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학생상해보험	30	25	22	77	
계	30	25	22	77	

2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	건설과	팀장	신병준	051-200-6422~3	
담당	건설과	팀장	양주순	051-200-6422~3	
담당	건설과	직원	이일성	051-200-6422~3	
담당	건설과	직원	박종민	051-200-6426~9	
담당	건설과	직원	강동훈	051-200-6426~9	
담당	건설과	직원	정재헌	051-200-6424	
담당	건설과	직원	손재홍	051-200-6423	
담당	건설과	직원	김시동	051-200-6422~4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 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원인분석

○ 해당 사항 없음 (안전사고 발생 건수 :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참고 매뉴얼 :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가이드(교육부, 2022)
※ 참고 매뉴얼 :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3)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참고 매뉴얼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교육부, 2022)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승강기 유지관리	210	200	196	606	
전기설비 안전관리	409	543	610	1,562	
교육시설안전인증	80	79	0	159	
내진성능평가	110	0	0	110	
계	809	822	806	2,437	

3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	안전관리센터	팀장	김보길	051-200-8120	
담당	안전관리센터	담당	하지혁	051-200-8118	
담당	안전관리센터	담당	김경아	051-200-8115	방사선 등
협조	안전관리센터	담당	김향금	051-200-8117	LMO 등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 · 장비 등의 훼손 발생

※ 사고유형 :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 건수		3	14	8	5	8	7.6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3	14	8	5	8	7.6
	계	3	14	8	5	8	7.6

□ 원인분석

○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 결여**
- 대부분의 사고가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주의 및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이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 결여에 따라, 연구개발활동 수행 중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연구실사고)** 연구실 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6개 분야, 13개 항목)을 분류하고, 각 사고 유형 별 예방·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한 연구실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 직무별 대응·행동요령 및 책무 제시

※ 참고 매뉴얼 :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참고 교내 매뉴얼 : 연구실사고 대비·대응 매뉴얼(안전관리센터)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연구실 안전보험 가입	18.0	16.9	20.0	54.9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14.9	19.9	18.7	53.5	
연구실 안전점검	18.9	19.6	20.6	59.1	
연구실 폐기물 위탁 처리	59.0	78.0	80.0	217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5.6	5.3	6.0	16.9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0.1	0.1	1.0	1.2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74.7	55.0	55.0	184.7	
계	191.2	194.8	201.3	587.3	

3. 감염병(코로나-19 등)

1 감염병 확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제23조의3, 제34조, 제35조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	보건진료소	소장	박영진	051-200-6331	
담당	보건진료소	담당	홍은미	051-200-6331~2	승학캠퍼스
담당	보건진료소	담당	류윤아	051-200-6331~2	승학캠퍼스
담당	보건진료소	담당	김의민	051-200-8465	부민캠퍼스

□ 위험요인

○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 확산에 의해 비말, 호흡기, 눈·코·입 점막 침투로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질환

- 코로나-19 확진자 증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감염병 상황 장기화로 인한 원격수업 및 비대면 교육으로 학습·정서적 결손발생 및 지역·계층간 학습격차 심화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감염자 수	74	1,752	-	-	-	365.2
인명피해(사망)	-	-	-	-	-	-

□ 원인분석

○ **해당 사항 없음(감염자 발생 건수 : 0)**

- 추후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 출몰로 인하여 교내 확산, 심화 될수 있으므로 유증상자 행동수칙 교육·관리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비대면 교육)**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대학의 각종 활동(수업·행사·자치활동·운동부 훈련 등)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기를 원칙으로 학사 운영

○ **(대면 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 조기 발견·조치 등 대학 내 코로나-19 감염 전파·확산을 방지

※ 참고 매뉴얼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2021)

□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시설 이용 제한 조치사항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 이동 경로 불명확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 이동 경로 불명확	⇨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 이용 중단을 최소화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및 현장 방역 여건에 따라 결정

4. 범죄

1 일반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등

범죄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	관리과	팀장	이원호	051-200-6632	주관부서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 건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 원인분석

○ 해당 사항 없음(일반범죄 발생 건수 :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방학, 연휴 등 기간 문단속 철저 안내 공문 또는 전체 이메일 발송 등 포함), 폭행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 등 CEPTED 기법 적용 검토

> ❖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
> ❖ **(접근통제)**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
>
> ❖ **(영역성 확보)**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 ❖ **(활동의 활성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학생지원센터, 통합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참고 매뉴얼 :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통합방범시스템 무인경비용역	1,636	1,675	1,787	5,098	
계	1,636	1,675	1,787	5,098	

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	인권센터	담당	박병규	051-200-5711	
담당	인권센터	담당	이석용	051-200-5712	
협조	교무과	팀원	권혜민	051-200-6102	교원
협조	학생과	팀원	정보윤	051-200-6202	학생
협조	총무과	팀원	권성길	051-200-6602	직원
협조	학생상담센터	조교수	윤미	051-200-6477	심리상담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 건수	성희롱	1	0	0	4	0	1.0
	성폭력	0	0	1	0	1	0.4
	계	1	0	1	4	1	1.4
피해자 수	성희롱	1	0	0	4	0	1.0
	성폭력	0	0	1	0	1	0.4
	계	1	0	1	4	1	1.4

□ 원인분석

○ 인권센터 설치를 통한 피해상담 및 신고 등 고충처리 창구 확대
- 인권센터를 통한 상담·신고 등 고충처리 창구 확대 결과, 피해 현황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구성원 성인지 감수성 증가 및 교내 성범죄 근절 유도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성희롱 행위)** 성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구축·운영

○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 예방과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 참고 매뉴얼 :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2020)

※ 참고 교내 매뉴얼 : 성폭력 신고 매뉴얼

□ 교내 성범죄 사건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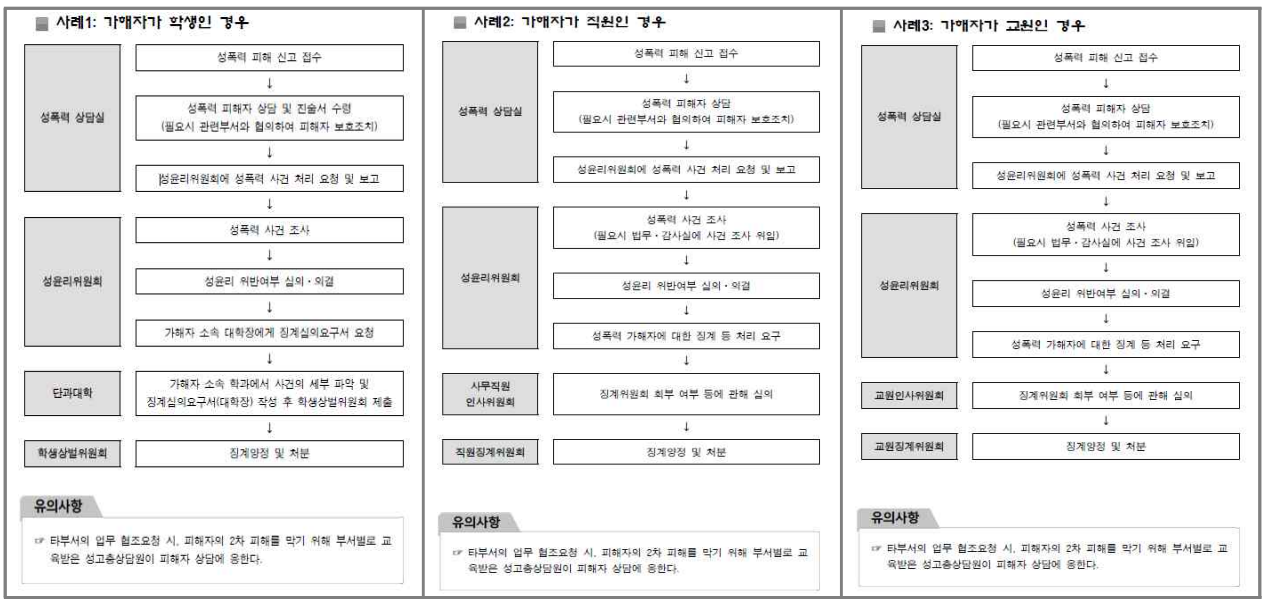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성범죄 예방교육	3	3	3	9	
계	3	3	3	9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	안전관리센터	팀장	김보길	051-200-8120	
담당	안전관리센터	팀원	하지혁	051-200-8118	
담당	총무과	담당	박경재	051-200-6603	신고/보험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 건수		1	3	4	1	1	2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1	3	4	1	1	2
	계	1	3	4	1	1	2

□ 원인분석

○ **근로자 부주의에 의한 재해**
-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은 근로자의 일상적인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였음(계단 보행 중 잡담 및 계단 미응시, 전방 유리창 미확인으로 인한 충돌 등)
- 재해사례 및 재발방지대책 공유 등을 통해 개인 부주의에 의한 재해가 감소하였으나, 근무환경 내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함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흄·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해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 참고 매뉴얼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이행계획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사업주 :**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처벌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망)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그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3개월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이상 발생
의무 이행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관리 8. 안전시설 및 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조직별 주요 업무

주체	주요 업무
경영책임자 (이사장)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총장)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관리 >**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안전 관리자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1,000명 : 1명)
보건 관리자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5,000명 : 1명)
관리감독자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지도**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지도**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지도**
산업보건의 (현업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등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현업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중대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산재보험 가입	104	115	118	337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0.6	0.6	0.7	1.9	
계	104.6	115.6	118.7	338.9	

2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	안전관리센터	팀장	김보길	051-200-8120	
담당	안전관리센터	팀원	하지혁	051-200-8118	
협조	총무과	팀원	박경재	051-200-6603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 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원인분석

○ **해당 사항 없음 (중대재해 발생 건수 : 0)**

- 단,「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으로 본교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없으나, 최근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관리는 필요함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처벌법 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 **(환경조성)**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참고 매뉴얼 :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2023)

□ 중대재해 관리체계 및 이행계획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사망)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교육기관 제외
의무 이행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4.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9.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 2. 인력, 예산 지원 3.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체계

○ **대상** : 캠퍼스(3개소)

○ **역할과 책임**

구분	주요 역할
경영책임자(이사장)	• 사업 대표 및 총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총장)	•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의 철저 이행, 사전·사후 지원 및 지도 등 관련업무 전반을 총괄·지도 ① 안전관리체계 구성 이행 여부 점검 확인 ② 관리감독자자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 지원 ③ 직종별 위해요인 확인 개선 방법 지도 및 지원 ④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 · 운영 ⑤ 도급·용역 위탁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 * 사업장에 재해예방 체계 안착 전까지 안전보건 이행상황 수시 점검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 · 운영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 집행 • 경영책임자의 안전 · 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준수
관리감독자 (관리과장, 건설과장 등)	•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지도 •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 · 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지도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 감독 지도

6. 기타

1 비상사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4 등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3조의5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	총무과	과장	신봉준	051-200-6601	
담당		담당	권성길	051-200-6602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피해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 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 원인분석

○ **해당 사항 없음 (비상사태 발생 건수 : 0)**
- 전시, 사변, 폭동 등 국가차원의 비상사태는 발생된 사례가 없으나, 관련 법령 및 충무계획 등에 따른 평시·전시 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실시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기능연속성 계획수립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교육·훈련)**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대비훈련, 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 참고 매뉴얼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Ⅲ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대학	학생)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직원)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연구실	학생 및 교직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 학교안전법

민 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2025.4.29.-2026.4.29.	1.1	19,605	21,600	13	5,000	3	3,000	신입생 OT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자기부담금 등)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대인	200,000	1,0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50,000	50,000	
교내·교외 치료비	치료비	1,000	1,000	-
	치료비	1,000	1,000	-
신입생OT치료비	신입생 치료비	1,000	1,000	-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	-	-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6	교육시설 공제	2026.1.1. 2026.12.31.	71,353	369,205㎡	71,404	-	-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천원)		비고(자기부담금 등)
	1인당	1사고당	
동아대학교 건물	-	818,841,591	-
부속물(드므)	-	206,367	-
승학캠퍼스 일반건물	-	486,580,928	-
승학캠퍼스 고가건물	-	9,450,087	-
부민캠퍼스 일반건물	-	229,669,012	-
구덕캠퍼스 일반건물	-	93,141,564	-
캠퍼스 별 배상책임(대물)	-	1,500,000	-
캠퍼스 별 배상책임(대인)	500,000	500,000	-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6	연구실 안전공제	2026. 1. 1. 2026.12.31.	1.941	8,673	16,834	-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천원)		비고(자기부담금 등)
	1인당	1사고당	
사망	200,000	-	유족급여 (정액 보상)
후유장해	200,000	-	장해급여 (후유장해 등급별 차등 보상)
질병·부상	2,000,000	-	요양급여 (질병의 경우, 상해가 직접 원인인 경우에 한하여 보상)
장례비용	10,000	-	장의비 (정액 보상)
입원비	50	-	입원급여 (3일 초과일부터 5만원/일, 최대 150만원 한도 보상)
손실 지원금	(수업료) 1,000 (기숙사비) 300	-	정규학기 미수료에 따른 손실액 발생 시 또는 15일 이상 연속 입원 시 일수별 차등 보상
중대 화상치료	10,000	-	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 정액 보상 (중등도 화상 400만원 정액 보상)

5.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7의2.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 조직 현황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	학생상담센터	연구교수	윤미	051-200-6477	
담당		전임상담원	정주희	051-200-6071	

□ 지원 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심리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목적 - 교내 구성원의 재난 경험자의 심리적 고통을 완하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개입을 제공 ○ 방법 - 학생상담센터 내 심리검사 및 해석·개인·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연계 지원 - 재난 발생으로 위기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시 재난 관련 집중상담 특별 프로그램 개설 운영 - 심리검사 종류 : 다면적 인성검사(MMPI-2), 통합스트레스 검사(IESSI) 등 ○ 세부절차 -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실시 - 검사 결과에 따른 단계별 위기 개입(1:1 개인 심리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원 - 재난 및 위기 수준에 따라 필요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협력 기관 연계(동아대병원, 사하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트라우마 센터 등)

Ⅳ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1. 재난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	건설과	팀장	최구진	051-200-6426~7	
담당	건설과	담당	강동훈	051-200-6426~7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천원)
학생 및 교직원 등	2025.6.25.	14:30~15:30	55명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합동소방훈련	▪ 관할기관과 공조 대응체계 확립 및 강화 ▪ 자위소방대 편성 및 훈련 시나리오 숙지 및 숙달 ▪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 능력 배양 등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천원)
학생 및 교직원	2026.7.(예정)	미정	미정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합동소방훈련	▪ 관할기관과 공조 대응체계 확립 및 강화 ▪ 자위소방대 편성 및 훈련 시나리오 숙지 및 숙달 ▪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 능력 배양 등

2. 학생 안전사고 예방 교육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	학생과	과장	김대준	051-200-6201	
담당	학생과	팀원	정보윤	051-200-6202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천원)
단체 행사 시 등 학생 안전	토론교육	2회	47명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단체 행사 시 등 학생 안전	-「교내·외 단체행사에 관한 지침」 및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교육 - 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교육 및 토론, 매뉴얼에 따른 신고 -「학생 자치 공간 관리지침」교육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천원)
단체 행사 시 등 학생 안전	토론교육	2회	약 47명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단체행사 시 등 학생안전	-「교내·외 단체행사에 관한 지침」 및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교육 -「학생 자치 공간 관리지침」교육 - 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교육 및 토론, 매뉴얼에 따른 신고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교육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	안전관리센터	팀장	김보길	051-200-8120	

□ 2025년 교육 · 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천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채용시 교육	2	2	570
	정기교육	2	54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사항

□ 2026년 교육 · 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천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채용시 교육	수시	미정	700
	정기교육	2	50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사항

4.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	안전관리센터	팀장	김보길	051-200-8120	
담당	안전관리센터	팀원	하지혁	051-200-8118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천원)
연구실 안전교육	신규교육	2	2,165	5,000
	정기교육	2	8,446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신규교육	집체교육을 통한 오프라인 안전교육 실시 (연구실 안전관리 기본, 연구실 사고 사례,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방법 등)
정기교육	원격교육시스템(LMS)를 이용한 온라인 안전교육 및 평가 시험 실시 (연구실 사고 사례, 화학안전, 생물안전 등)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천원)
연구실 안전교육	신규교육	2	2,000	5,000
	정기교육	2	10,000	
연구실 안전훈련	사고대응훈련	1	50	1,000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연구실 안전교육 (신규교육)	집체교육을 통한 오프라인 안전교육 실시 (연구실 안전관리 기본, 연구실 사고 사례,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방법 등)
연구실 안전교육 (정기교육)	원격교육시스템(LMS)를 이용한 온라인 안전교육 및 평가 시험 실시 (연구실 사고 사례, 화학안전, 생물안전 등)
연구실 안전훈련	연구실 내 사고 발생을 가정한 가상 시나리오에 기반한 실제 대피훈련

5. 감염병 예방교육

감염병 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	보건진료소	소장	박영진	051-200-6334	
담당	보건진료소	담당	홍은미	051-200-6331~2	
담당	보건진료소	담당	류윤아	051-200-6331~2	
담당	보건진료소	담당	김의민	051-200-8465	

□ 2025년 교육 · 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대응교육	감염병 예방·대응교육	4	약 2,000명	-
	감염병 관리교육	2	약 200명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감염병 예방·대응교육 (홈페이지 게시)	· 감염병 동향 및 예방 정보 안내 · 감염병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 접촉시 행동요령 및 검사 · 감염병 확진자 감염 후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상담,보건교육

□ 2026년 교육 · 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대응교육	감염병 예방·대응교육	4	약 2,000명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감염병 예방·대응교육 (홈페이지 게시)	· 감염병 동향 및 예방 정보 안내 · 감염병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 접촉시 행동요령 및 검사 · 감염병 확진자 감염 후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상담,보건교육

6. 성범죄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	인권센터	팀원	박병규	051-200-5711	
담당	인권센터	팀원	이석용	051-200-5712	
협조	총무과	팀원	박경재	051-200-6602	교육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천원)
학생(성폭력)	2025. 5.~2026. 1.	1	11,108	3,000
학생(가정폭력)	2025. 5.~2026. 1.	1	10,638	
교직원(성희롱)	2025. 5.~2026. 1.	1	1,547	
교직원(성매매)	2025. 5.~2026. 1.	1	1,539	
교직원(성폭력)	2025. 5.~2026. 1.	1	1,533	
교직원(가정폭력)	2025. 5.~2026. 1.	1	1,526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폭력예방교육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온라인교육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천원)
학생	성폭력, 가정폭력	1	약 20,000명	3,000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예방	1	약 2,000명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폭력예방교육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온라인교육

7. 비상대비 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	총무과	과장	신봉준	051-200-6601	
담당	총무과	담당	권성길	051-200-6602	

□ 2025년 교육 · 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교육	2025. 3. 5.	3시간 30분	1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교육	2025학년도 총무실시계획 작성 및 특례기관 보안교육 참석

□ 2026년 교육 · 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교육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교육	1	1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교육	2026학년도 총무실시계획 작성 및 특례기관 보안교육 참석

Ⅴ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외 협력체계 구축

1. 대학 캠퍼스 안전사고 지원기관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비상연락망 구축 및 관리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각종 협의회 참석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지식 습득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 비상 연락처

○ 재난 및 안전사고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 고
부산 소방재난본부	051-760-3006	종합상황실
한국전기안전공사	051-960-5260	기술진단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51-640-0825	안전지원부
프라임병원	051-202-7800	승학캠퍼스
동아대학교의료원	051-240-5300	부민, 구덕캠퍼스
사하 경찰서	051-290-2330	승학캠퍼스
서부 경찰서	051-540-1030	부민, 구덕캠퍼스

○ 연구실사고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 고
부산 소방재난본부	051-760-3006	종합상황실
한국전기안전공사	051-960-5260	기술진단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51-640-0825	안전지원부
프라임병원	051-202-7800	승학캠퍼스
동아대학교의료원	051-240-5300	구덕캠퍼스
사하 경찰서	051-290-2330	승학캠퍼스
서부 경찰서	051-540-1030	구덕캠퍼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3-240-6455	연구실사고 보고

○ **감염병 확산**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 고
중앙사고수습본부	044-202-1769	보건복지부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300	질병관리청
부산의료원	051-607-2140	응급실
사하구 보건소	051-220-0052	승학캠퍼스
서구 보건소	051-290-5233	부민, 구덕캠퍼스

○ **범죄**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 고
사하 경찰서	051-290-2330	승학캠퍼스
서부 경찰서	051-540-1030	부민, 구덕캠퍼스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1-207-1295	일반범죄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051-802-2082	성범죄, 가정폭력 등
부산스마일센터	051-582-1295	성범죄
부산해바라기센터	051-244-1375	성범죄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 고
부산 소방재난본부	051-760-3006	종합상황실
한국전기안전공사	051-960-5260	기술진단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51-640-0825	안전지원부
프라임병원	051-202-7800	승학캠퍼스
동아대학교의료원	051-240-5300	부민, 구덕캠퍼스
사하 경찰서	051-290-2330	승학캠퍼스
서부 경찰서	051-540-1030	부민, 구덕캠퍼스

○ **비상사태**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 고
교육부	044-203-6118	
국방부	02-748-1111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총괄	건설과	팀장	최구진	051-200-6426~7	
		총괄		팀장	신병준	051-200-6421~2	
		담당		팀장	양주순	051-200-6423	
		담당		담당	박종민	051-200-6426~7	
		담당		담당	이일성	051-200-6428	
		담당		담당	정재헌	051-200-6424	
		담당		담당	강동훈	051-200-6429	
		담당		담당	손재홍	051-200-6423	
		담당		담당	김시동	051-200-6422~4	
		협조	총무과	담당	권성길	051-200-6603	
		협조	관리과	팀장	이원호	051-200-6632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총괄	학생과	과장	김대준	051-200-6201	
		담당		담당	정보윤	051-200-6202	
		담당		담당	윤지원	051-200-6202	보험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총괄	건설과	팀장	신병준	051-200-6422~3	
		담당		팀장	양주순	051-200-6422~3	
		담당		7급	박종민	051-200-6426~7	
		담당		7급	이일성	051-200-6428	
		담당		8급	정재헌	051-200-6424	
		담당		8급	강동훈	051-200-6429	
		담당		8급	손재홍	051-200-6423	
		담당		9급	김시동	051-200-6422~4	
	③ 연구실 사고	총괄	안전관리센터	팀장	김보길	051-200-8120	
		담당		팀원	하지혁	051-200-8118	
		담당		팀원	김경아	051-200-8115	방사선 등
		담당		팀원	김향금	051-200-8117	LMO 등
3. 감염병(코로나-19 등)	① 감염병 확산	총괄	보건진료소	소장	박영진	200-6331	
		담당		담당	홍은미	200-6331~2	승학캠퍼스
		담당		담당	류윤아	200-6331~2	승학캠퍼스
		담당		담당	김의민	200-8465	부민캠퍼스
4. 범죄	① 일반범죄	총괄	관리과	팀장	이원호	051-200-6632	
	② 성범죄	총괄	인권센터	팀원	박병규	051-200-5711	
		담당		팀원	이석용	051-200-5712	
		협조	학생상담센터	연구교수	윤미	051-200-6477	심리상담
		협조	교무과	팀원	권혜민	051-200-6102	교원
		협조	학생과	담당	정보윤	051-200-6202	학생
		협조	총무과	담당	권성길	051-200-6602	교직원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총괄	안전관리센터	팀장	김보길	051-200-8120	상황통제
		담당		팀원	하지혁	051-200-8118	조사, 위험성평가
		담당	총무과	담당	박경재	051-200-6603	산재, 신고
6. 기타	① 비상사태	총괄	총무과	과장	신봉준	051-200-6601	
		담당		담당	권성길	051-200-6602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건수		4	2	0	1	0	1.4
		재산피해(백만원)		8.8	31	0	260	0	59.96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학생)	발생 건수		4	10	17	23	16	14
		재산피해(백만원)		2	4	3	14	8	6.2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4	10	15	17	13	11.8
			계	4	10	15	17	13	11.8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 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③ 연구실 사고	발생 건수		3	14	8	5	8	7.6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3	14	8	5	8	7.6
			계	3	14	8	5	8	7.6
3. 감염병 (코로나19 등)	① 감염병 확산	감염자 수		74	1,752	-	-	-	365.2
		인명피해(사망)		-	-	-	-	-	-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 건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② 성범죄	발생 건수		1	-	1	4	1	1.4
		피해자 수		1	-	1	4	1	1.4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 건수		1	3	4	1	1	2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1	3	4	1	1	2
			계	1	3	4	1	1	2
	② 중대재해	발생 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6. 기타	① 비상사태	발생 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1. 재난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종합정밀점검 보수	50	59.2	45	154.2	
		작동기능점검 보수	71	47.8	45	163.8	
		소방시설 유지보수	80	78	50	208	
		소방 안전관리 용역	94.5	94.5	86	275	
		건축물 방수 공사비	790	719	100	1,609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52	86	32	170	
		계	1,137.5	1,084.5	358	2,580	
2. 안전사고	1 대학 안전사고 (학생)	학생상해보험	30	25	22	77	
		계	30	25	22	77	
	2 교육시설 안전사고	승강기 유지관리	210	200	196	606	
		전기설비 안전관리	409	543	610	1,562	
		교육시설안전인증	80	79	0	159	
		내진성능평가	110	0	0	110	
		계	809	822	806	2,437	
	3 연구실 사고	연구실 안전보험 가입	18.0	16.9	20.0	54.9	
		건강검진 시행	14.9	19.9	18.7	53.5	
		연구실 안전점검	18.9	19.6	20.6	59.1	
		폐기물 위탁 처리	59.0	78.0	80.0	217	
		안전 교육・훈련	5.6	5.3	6.0	16.9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0.1	0.1	1.0	1.2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74.7	55.0	55.0	184.7	
		계	191.2	194.8	201.3	587.3	
3. 감염병	1 감염병 확산	감염병 예방	-	-	-	-	
		계	-	-	-	-	
4. 범죄	1 일반범죄	통합방법시스템 무인경비 용역	1,636	1,675	1,787	5,098	
		계	1,636	1,675	1,787	5,098	
	2 성범죄	성범죄 예방교육	3	3	3	9	
		계	3	3	3	9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산업재해	산재보험 가입	104	115	118	337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0.6	0.6	0.7	1.9	
		계	104.6	115.6	118.7	338.9	
6. 기타	1 비상사태	비상사태	-	-	-	-	
		계	-	-	-	-	